

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546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1. 1. .
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치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을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개요

1) 대상시설: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‘신금호아이꿈누리터’

시설명	소재지	규모(㎡,명)		상근인력(명)	운영개시일
		면적	정원		
신금호 아이꿈누리터	성동구 행당로 6, 103호	90.75	20	센터장 1 돌봄교사 1	2021. 1. 27.

2) 위탁기간: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

3) 위탁체 선정: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선정

- 자격요건: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비영리민간단체

4) 주요 위탁내용

-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

-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시설·재산 관리(청사 및 물품 관리 등)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1)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 2
- 2)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4조
- 3)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1)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시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
- 2) 아동 및 돌봄 분야의 전문성 및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 도모
- 3) 지역사회 내 인적·물적 자원 확보 및 연계를 통한 운영 내실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1)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 2
- 2)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4조
- 3)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

나. 예산 조치

- 1) 운영예산: 연65,376천 원[2021년 예산(안)]
- 2) 세부내역: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제반 운영비
- 3) 예산확보: 국비 10,600천 원, 시비 49,176천 원, 구비 5,600천 원

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‘신금호아이꿈누리터’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인건비: 증가율(3% 적용)
 ※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단일임금 적용,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 기준에 따라 호봉 개별 확정
- 운영비: 증가율(2% 적용), 물가 상승률 반영하여 산정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 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신금호아이꿈누리터 운영	65,376	100,632	103,255	105,982	108,764	484,009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 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국 비	10,600	15,910	15,910	15,910	15,910	74,240
	시 비	49,176	76,184	78,637	81,189	83,794	368,980
	구 비	5,600	8,538	8,708	8,883	9,060	40,789
	합 계	65,376	100,632	103,255	105,982	108,764	484,009

5. 덧붙이는 의견: 구체적인 세출은 변경될 수 있음

6. 작성자: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함숙진(연락처 02-2286-6665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용

(단위 : 천 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신금호 아이꿈누리터	인건비	52,976	81,660	83,904	86,244	88,632	393,416
	운영비	12,400	18,972	19,351	19,738	20,132	90,593
	총 비용	65,376	100,632	103,255	105,982	108,764	484,009

[관계법령]

□ 아동복지법

제44조의 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. 15.]

□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

제8조(돌봄 시설 설치·운영)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·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14조(위탁) 구청장은 초등 방과 후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5. 19.>

□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구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·시설관리 사무 등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,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자치사무는 성동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다만,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성동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.